

의안번호	2213269
의 퇴 인	민형배 의원
회 답 일	2026. 1. 5.
추계번호	25A5288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(주민참여형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실시)	(제1항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1.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 2.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분 매입 3.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조성하는 펀드 가입 4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(제2항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근 주민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제26조제5항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	(제5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¹⁾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<u>다만,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조합,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 (주민참여형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실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6조제5항 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	

- 1) 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.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곳의 인근 주민에게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조합, 인근 주민, 마을 기업에 대하여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를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, 사업비에 대하여 장기·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등 설치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, 인근 주민이나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재함
 - 또한 현행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사업은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음
- * [참고자료 1]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및 금융 지원 사업
- 개정안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근 주민,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, 국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원 대상, 금액 등의 정보가 부재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 지원사업

세부사업-내역사업 (회계, 코드)	내용	예산(백만원)		
		2023	2024	2025
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(5202-303)	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	247,000	167,489	168,212
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(융자) (5202-304)	신·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·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	463,170	369,280	426,30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